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-17호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6년 05월 06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(태안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「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
- 나. 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변경
- 다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(별표)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금지구역 변경

-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(' 25. 3. 4.)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

나. 재검토 기한 설정

-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로 변경

다. 부칙 신설

- 신설: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24호는 폐지한다.

라. [별표]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변경

현행					개정안				
1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					1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				
연번	장소	금지구역	금지대상	금지기간	연번	장소	금지구역	금지대상	금지기간
1	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	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	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 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1	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	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	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 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
2	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	"	"	"	2	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	"	"	"
3	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 해수욕장	"	"	"	3	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 해수욕장	"	"	"
4	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	"	"	"	4	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	"	"	"

5	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해수욕장	"	"	"
6	충남 태안군 안면읍 삼봉 해수욕장	"	"	"
7	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 해수욕장	"	"	"
8	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	① 북위 36도 40분 42초, 동경 126도 07분 24초 ② 북위 36도 40분 42초, 동경 126도 07분 38초 ③ 북위 36도 40분 24초, 동경 126도 07분 47초 ④ 북위 36도 40분 24초, 동경 126도 07분 24초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역 *단,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안흥외항을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	모든 수상 레저기구	연 중

2.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
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
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
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
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	
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부 칙	
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	
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24호는 폐지한다.	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0일(수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(해양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사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

- 1) 우편 또는 FAX 등(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-13,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)
 - 전 화: 041-950-2851(경장 강민정), FAX: 041-950-2414
 - 전자우편: popa2305@korea.kr
- 2)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경장 강민정, 041-950-28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